

## 재중 교포의 인구학적 위치

하와이 대학교보건대학원 동서연구원 인구연구소

박 재 빈

= Abstract =

### The Demographic Position of the Koreans in China

Chai Bin Park

University of Hawaii School of Public Health and  
East-West Center Population Institute, Honolulu, Hawaii, USA

현재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며, 그 인구총수는 6,700만을 초과한다. 중국정부는 특히 70년대 후반 서부터 소수민족에 대한 일련의 보호정책을 쓰고 있으며 다수민족인 漢族에 대하여 엄격히 실시하는 1가구1자녀 정책에서도 少數民族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수민족의 증가는 현저하게 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인구학적 특성으로 보면 소수민족은 아직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朝鮮族이라고 일컫는 재중 우리교포는 한족을 포함하여 중국내 어느 민족과 비교하여도 인구학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구증가율은 가장 낮으며 어느민족보다 앞서서 1970년대 중반에 이미 대치수준 이하의 출생률에 도달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Han 등, 1988). 문맹률은 최하이며 대학수업율은 최고로 높다 (張, 1984). 사망률은 전소수민족중 가장 낮고 평균 수명은 가장 길다 (Dowdle, 1984).

이렇게 재중 조선족은 인구학적으로 가장 선진적이기 때문에 1자녀정책에 대한 수용 준비가 다른 민족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조선족은 소수민족에 속하기 때문에 1자녀정책에 구애될 필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조선족 가정에서 1자녀만을 낳겠다는 서약을 하여 이른바 "독생자녀증"을 영수하면 이것은 한족의 경우와 달리

자율의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 두가지를 다루기로 하겠다. 즉 조선족이 인구학적으로 보아 탄 민족에 비하여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중국의 중요인구정책인 1가정 1자녀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독생자녀증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밖에 중국의 대소수민족 인구정책의 앞날에 대하여도 약간의 전망을 하여볼까 한다.

#### 1. 소민족의 현황

중국에서 소수민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인류학적, 체위학적 견지에서보다는 문화적, 언어학적인 견지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Eberhard, 1982). 오랜 세월을 두고 한족과 같이 살아온 민족중에는 문화적으로 동화되어 원래의 민족성을 상당히 상실한 것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등으로 일부러 자기본래의 민족을 숨겨온 예도 꽤 있었던 싶다. 1953년이래 소수민족을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노력이 정부에서 행하여져 1957년에 처음으로 11개의 소수민족을 공식 인정하였고 (Fei, 1980). 가장 최근으로는 1980년에 인구 만여명을 거느린 基諸族이 새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았다 (Fraser, 1987).

현재 이렇게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공식 인정한 소수민족은 55개 있으며 1982년 人口普查(센서스)에 의하

\*제40차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표1. 中國主要少數민족의 人口와 集居地域

| 민족    | 1964    | 1982      | 성장(%) | 集居地域           |
|-------|---------|-----------|-------|----------------|
| 全中國   | 691,220 | 1,003,937 | 45.2  |                |
| 漢族    | 651,296 | 936,704   | 43.8  |                |
| 全少數民族 | 39,884  | 67,233    | 68.6  |                |
| 壯族*   | 8,386   | 13,378    | 59.5  | 廣西自治區          |
| 回族+   | 4,473   | 7,219     | 61.4  | 寧夏自治區, 甘肅, 全國的 |
| 維吾你族* | 3,996   | 5,957     | 49.1  | 新疆自治區, 湖南, 甘肅  |
| 彝族*   | 3,381   | 5,453     | 61.3  | 四川, 貴州, 云南     |
| 苗族*   | 2,782   | 5,031     | 80.8  | 云南, 廣西, 四川     |
| 滿族+   | 2,696   | 4,299     | 59.5  | 遼寧, 吉林, 黑龍江    |
| 藏族*   | 2,501   | 3,890     | 54.7  | 西藏自治區, 青海, 甘肅  |
| 蒙古族*  | 1,966   | 3,412     | 73.6  | 內蒙古自治區, 遼寧, 吉林 |
| 土家族** | 525     | 2,833     | 439.8 | 湖南, 湖北, 四川     |
| 布依族*  | 1,348   | 2,120     | 57.3  | 貴州             |
| 朝鮮族*  | 1,340   | 1,764     | 31.7  | 吉林, 黑龍江, 遼寧    |
| 侗族*   | 836     | 1,425     | 70.4  | 湖南, 廣西, 貴州     |
| 요族*   | 857     | 1,403     | 63.6  | 廣西, 雲南, 湖南, 貴州 |
| 白族**  | 707     | 1,131     | 60.1  | 雲南             |
| 哈尼族*  | 629     | 1,059     | 68.4  | 雲南             |

人口單位：1,000  
 \*：自民的語使用  
 +：漢文語使用

면 그 총인구는 6,724만이었다. 절대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를 훨씬 초과하나 중국전체인구로 보면 6.7%에 불과하다. 55개소수민족의 대부분은 미미한 존재로서 백만 이상을 가진 소수민족 15개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6천만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이다.

가장 큰 민족은 壯族으로 인구 1,300만을 헤아리며, 회족, 維吾你족, 彝족, 苗族들이 각각 500만 이상을 거느리고 뒤따르고 있다. 조선족은 176만여로 제1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주요 소수민족의 수와 집중지역은 제1표에 나타내었다. 작은 민족으로는 赫哲족, 高山족 등을 위시하여 만명미달이 9개나 된다.

이들 소수민족은 대부분 인구밀도가 낮은 산간벽지, 국경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회족만이 비교적 널리 퍼져 있다고 하겠다. 한 소수민족이 1지역에 집중하고 있으면 1949년에 제정된 정책에 의하여 자치지역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자치지역으로 省에 해당하는 內蒙古자치구, 新疆維吾你자치구, 廣西장족자치구, 寧夏회족자치구 및 西藏자치구의 5개 자치구외에 31개 자치州, 104개 자치縣이 있으며 면적으로는 전국의 62.5%가 자치지역에 속한다고 한다(張과 楊, 1985) 이러한 자치지역에는 44개 소수민족의 5,900만 이상이 거주하는 바 이는 저소수민

족의 89%에 달하는 수이다(賀, 1988)

현 공산당정부가 들어서기전까지는 소수민족중에는 감소경향을 보인것이 많았고 개중에는 멸종의 위기에 있는것도 있었다고 한다(Zhang, 1984).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양상이 달라져 1964년과 1982년의 양인구조사결과로 보면 한족인구증가가 43.2%였었는데 비하여 소수민족은 68.4%로 나타났다.

연평균의 성장률로 환산하면 이는 한족에 대하여 2.0%, 소수민족에 대하여 2.9% 이상에 해당한다. 물론 소수민족간에서의 差는 심하였고 예를 들어 壯족이 2.7%인 반면 묘족이 3.3%였으며 조선족은 후에 재론하겠지만 1.5%에 불과하였다. 土家族에 있어서는 생물학상 불가능한 약 10%만 수자를 제시하였으나 이것은 인위적인 것으로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소수민족이 크게 증가한데에는 진실한 증가와 인위적인 증가의 두가지가 있다. 당과 정부가 다같이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민족평등정책을 펴며 따라 소수민족에의 인구억제정책은 느슨해졌으며 그들의 출생률은 현저히 높아졌다. 보호책의 실시로 사망률 역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의 자연증가율은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1981년 한족의 일반출생율은 81이었으나 소수민

족의 그것은 130이었고 합계출생율은 漢族의 부인당 2.5에 대하여 소수민족은 4.6이었다. 제1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30세이후와 20세이전의 소수민족의 연령별출생율은 한족에 비하여 수배나 높다. 20세까지의 누적혼인율을 보면 중국인구정책의 “晚, 稀, 少”의 晚을 반영하여 한족은 0.16에 불과하였으나 소수민족은 0.35로 2배이상이었다(中國人口情報資料中心,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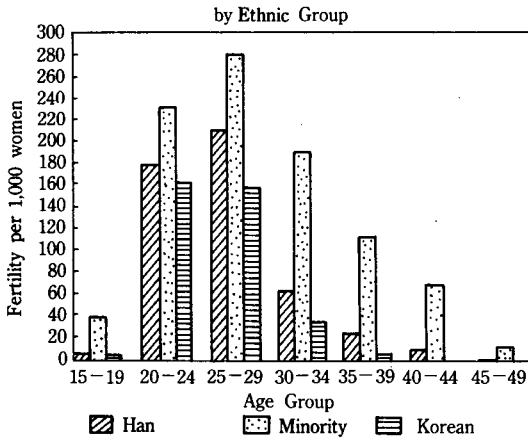


Fig. 1 Age-Specific Fertility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의 전환은 1978년의 제11차 당 중앙위 3중全會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楊, 1984). 민족 성분회복개정령을 선포하고 소수민족의 번영보호책을 실시함에 따라 종전에 자기의 민족배경을 숨겨왔던 자들이 민족성을 진실하게 밝히게 되었다고 한다. 보고에 따르면 1978년이후의 소수민족 증가수의 반가량이 민족 성분보고의 改變에 의한것이라고 한다(張과 楊, 1986).

표2. 中國의 朝鮮族 集中地域

| 地 域   | 朝鮮族人口 (1982) | %    | 全人口           | 朝鮮族의 全人口對% |
|-------|--------------|------|---------------|------------|
| 全 國   | 1,765,204    | 100  | 1,003,913,927 | 0.18       |
| 吉 林 城 | 1,104,071    | 62.5 | 22,560,024    | 4.9        |
| 延邊自治州 | 754,576      | 42.7 | 1,871,508     | 40.3       |
| 長白自治縣 | 13,156       | 0.7  | 76,048        | 17.3       |
| 黑龍江省  | 431,644      | 24.5 | 32,665,512    | 1.3        |
| 牡丹江地區 | 171,956      | 9.7  | 3,242,510     | 5.3        |
| 寧安縣   | 33,294       | 1.9  | 401,128       | 8.3        |
| 海林縣   | 32,184       | 1.8  | 423,478       | 7.6        |
| 松花江地區 | 99,753       | 5.6  | 5,404,505     | 1.8        |
| 五常縣   | 38,536       | 2.2  | 858,417       | 4.5        |
| 合江地區  | 60,689       | 3.4  | 4,320,421     | 1.4        |
| 哈爾濱市  | 30,603       | 1.7  | 2,542,832     | 1.2        |
| 遼寧省   | 198,252      | 11.2 | 35,721,694    | 0.6        |

1982년 현재인구

압박민족인 한족으로 행세하였던 湖南의 土家족은 민족 차별의 소멸로 원 민족성을 되찾았다고 하는 바(Fei, 1980), 張(1984)에 의하면 토가족은 1978년에서 82년까지 사이에 수자상 4배나 늘었다고 한다. 滿族역시 같은 기간에 71%의 증가를 보였다.

한 조사에 의하면 滿漢間, 蒙漢間의 통혼가정의 429명 자녀중 만족이나 몽고족으로 자기민족성분을 밝히는 자가 321명이었다는 바 이는 전 혼혈아의 75.8%에 해당하는 것이다(張과 楊, 1986). 78-82년 4년간에 소수민족의 인위적증가는 절대수로 약600만이 된다고 하며 이는 전소수민족의 10%나 되는 숫자이다(張, 延, 邊, 1984). 그러나 소수민족의 자연증가율은 두 인구조사의 수치에서 얻은 2.9%가 아니라 2.4%라고 할것이지만 그래도 한족보다는 20%나 높은 증가율인 셈이다.

소수민족의 연령구성, 교육분포, 직업분포같은 인구특성은 다음 절 조선족의 인구현황에서 논하기로 하겠다.

2. 在中 朝鮮族의 現況

1982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재중 조선족은 약 176萬으로 소수민족중 제11위를 차지하는 크기다. 그 63%인 110萬이 吉林省에 거주하고 24%인 43萬이 黑龍江省에, 11인 20萬이 遼寧省에 거주하여 이 3성에 전교포의 98% 이상이 살고 있는 셈이다. 길림성 교포의 43%인 75만 이상은 전에 間島라고 일컬었던 延邊(제2도)에 거주하고 흑룡강성에서는 77%가 牡丹江, 松花江 및 合江의 3개 지역에 집결하고 있다. 이렇게 조선족은 동쪽끼리 서로 영커사는



Fig. 2 Locati on of Yanbian prefecture

경향이 있다. 또 이민전의 출신지역에 따라 集居한다고 하며(金과 徐, 1988) 원래가 농경이 살림의 주요방책이었던만큼 물줄기를 따라 정착하였다고도 한다. 총 100여만의 교포가 있는 길림성도 전인구수에 비하면 5%에 지나지 않고 축룡강성에서는 겨우 1.3%를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지역적으로 보면 교포는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전인구의 40%를, 목단강지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憲山 對岸에 있는 길림성 通化地區의 長自縣이 조선족자치현을 이루고 있어 현인구의 17.3%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자체가 7만6천의 소현이기 때문에 조선족은 1만 3천여에 불과하다(제2표).

만주를 영토로 하였던 고구려시대를 제외하면 우리민족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별로 오래된 일이 아니다. 연변에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겨우 백여년에 지나지 않으며 1869년의 북조선 대기근으로 대거 人殖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 월경이 주는 조선조나 淸朝나 다같이 엄금하는 바였으나 우리민족의 탁월한 농경기술은 寒地에서 벼농사를 성공시켜 1880년대에 와서는 만주당국으로 하여금 조선족환영으로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다고 한다(UN, 1952).

일본의 한반도 침략후 우리민족의 만주이주는 현저히 증가하여 연변교포는 1907년에 全州인구의 4분의1미만인 7,300명에 불과하였으나 1933년에는 40만을 초과하여 전인구의 70%를 이루게 되었다. 1950년경까지 조선족은 동주의 다수민족으로 군림하였으나 차츰 비중을 잃어 1960년대 초반에는 약60만으로 한족과 수적으로 동등하게 되었고 현금에 와서는 한족이 오히려 6대4로 조선족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된것은 조선족의 출산력이 낮은 탓도 있지만 (길림성 일반산생물 조선족 47에 대하여 한족 116

표3. 中國 少數民族別 人口學的 指標(1982年)

| 민족    | 扶養係數 (%) | 中央值 年令 | 大學就學 比 <sup>1)</sup> | 文盲率 <sup>2)</sup> | 婦人當 出生數 <sup>3)</sup> | 一子女 婦人比 <sup>4)</sup> | 平均 壽命 | 農業 從事比 <sup>5)</sup> | 專 門 技術職比 |
|-------|----------|--------|----------------------|-------------------|-----------------------|-----------------------|-------|----------------------|----------|
| 全 國   | 62.6     | 22.7   | 6.8                  | 31.9              | 2.62                  | 18.1                  |       | 73.7                 | 5.1      |
| 少數民族  | 77.5     | 19.4   | 4.4                  | 44.3              | 2.98                  | 16.1                  |       | 85.1                 | 4.0      |
| 壯 族   | 83.7     | 19.5   | 2.6                  | 33.7              | 2.78                  | 13.4                  | 57.7  | 91.1                 | 2.9      |
| 回 族   | 69.2     | 20.4   | 8.0                  | 42.3              | 2.81                  | 18.2                  | 55.2  | 61.8                 | 5.7      |
| 維 吾 你 | 83.8     | 19.6   | 5.9                  | 43.6              | 3.49                  | 21.5                  | 41.3  | 86.0                 | 4.2      |
| 彝 族   | 85.4     | 18.2   | 1.0                  | 63.2              | 3.45                  | 13.6                  | 47.6  | 94.6                 | 1.9      |
| 苗 族   | 86.7     | 18.2   | 1.4                  | 59.7              | 3.42                  | 13.1                  | 46.1  | 95.1                 | 1.8      |
| 滿 族   | 62.6     | 21.3   | 10.0                 | 18.5              | 2.26                  | 22.2                  | 46.0  | 61.7                 | 8.3      |
| 藏 族   | 80.6     | 19.7   | 2.4                  | 75.0              | 2.94                  | 19.9                  | 39.1  | 90.9                 | 3.6      |
| 蒙 古 族 | 75.1     | 19.1   | 9.6                  | 29.8              | 2.81                  | 16.2                  | 48.8  | 74.4                 | 9.5      |
| 土 家 族 | 73.3     | 19.7   | 1.8                  | 33.7              | 2.89                  | 15.4                  | 41.0  | 93.0                 | 2.9      |
| 布 依 族 | 81.1     | 19.3   | 1.6                  | 56.4              | 3.12                  | 13.8                  | 42.9  | 94.5                 | 2.1      |
| 朝 鮮 族 | 48.1     | 24.3   | 21.8                 | 11.5              | 2.31                  | 21.5                  | 58.4  | 59.7                 | 10.2     |
| 侗 族   | 76.0     | 19.4   | 2.4                  | 45.2              | 2.90                  | 13.2                  | 46.6  | 93.4                 | 2.4      |
| 佤 族   | 81.2     | 18.8   | 1.7                  | 48.2              | 3.03                  | 15.4                  | 48.7  | 95.1                 | 2.0      |
| 白 族   | 76.1     | 19.3   | 4.8                  | 41.6              | 2.96                  | 12.9                  | 52.4  | 85.8                 | 4.2      |
| 哈 尼 族 | 85.3     | 18.0   | 0.5                  | 71.3              | 3.46                  | 15.2                  | 50.9  | 95.7                 | 1.6      |

1) 6세 이상인구 천명당

2) % 6세이상인구

3) 15-64才 婦人當

4) (15-64才-無子女)婦人當

5) 15才以上 有業人口對%

(陳, 1986)) 근래 한족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한데에 주 원인이 있다고 한다(朱와 劉, 1986). 1952년에 연변은 조선족자치주로 인정되었고 현재 州長도 교포이고 副州長 6명중 3명이 교포이다. 장백자치현은 1958년에 성립되었다.

在中朝鮮族의 인구특성은 여러면에서 타민족과 판이하다. 일반적으로 조선족은 老齡이고, 교육정도가 높으며, 非農型이다. 제3표에 타주요민족과의 비교를 제시하였거니와 조선족이 독특한 위치에 있음은 역력하다. 예를 들어 교육정도는 타의 추종을 허하지않고, 낮은 출생율을 반영하여 부양계수는 매우 낮다. 人口轉換的學說에 의한 인구학적 進化度를 잴다면 조선족에 쉽게 수위를 줄 수 있고 滿族이 그뒤를 따른다고 할수 있겠다. 한편 아직 傳統的 위치에 서 벗어나지 못한 민족으로는 舍尼, 彝, 苗, 布衣족 등을 들수 있다. 受稻作 관계로 흑룡강성에서는 교포의 농가가 많아 농가비율이 한족보다 3대1로 앞서 있지만 그러면서도 전문기술직에 있는 퍼센테지는 한족보다 높다(金과 徐, 1988).

### 3. 獨生子女證制

1자녀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에서는 독생자녀증제가 실시되고 있다. 1자녀만을 가진 부부로서 더이상 아이를 낳지않겠다고 서약하면 이 증명이 교부된다. 증명영수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정하지 않은 省이 많으나 “獨生子女”의 정의는 엄격한것 같다. 예를 들어 첫출산이 쌍생아이면 증명을 받을 수 없고 두자녀를 가졌다가 그중 하나가 탄집의 양자로 나갔거나 이혼하여 부부가 각각 아이 하나씩 키워도 증명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두자녀중 하나가 죽었으면 증명신청이 가능하다. 독생자녀라 하여도 14세가 넘으면 부부 공히 잉태가능하지 않는한 증명교부는 안된다.

독생자녀증이 나오면 부모와 아이에 여러 혜택이 베풀어지는데 거주지나 직장의 규정에 따라 혜택의 내용에는 약간의 차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는 보건비조로 독생아가 14세될때까지 매달 현금지급(평균5元 정도=1.85美弗) 받고 농촌에서는 토지공급이나 자가 처분이 가능한 양곡량이 증가된다. 道 産假가 길어지고 식량배급, 주택, 醫療, 탁아, 취업, 노령사회보장 등에서 특별배려를 받게된다. 혜택은 독생자녀증 수령과 함께 유효하므로 증명신청이 빠를수록 혜택은 커진다.

독생자녀증수령 후 제2子를 출생하면 증명은 물론이고 이미 받은 혜택도 반환하여야 한다. 증명을 안가져도 계획외, 즉 허가없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제약조치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치의 대표적 예를 들면 임금의 低減, 사유지 배당의 금지, 승진기회의 상실, 入宅과 입학의 우선권상실 등이다. 제약조치에도 역시 지역이나 직장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제2자를 낳는 허가를 받으려면 부부가 “특수사정”하에 있어야 한다. 이 특수사정에는 5개사항이 있어 이들은 (1) 첫 아이가 비유전성 질환으로 정상노동자로 성장할 수 없을때, (2) 재혼부부중 한쪽에는 자녀가 하나 있으나 타방에는 자녀가 없을때, (3) 장기간 不妊으로 양자를 얻은 후 임신이 되었을때, (4) 소수민족 출신일때, (5) 외국서 귀화한 화교일때이다.

이밖에 농촌가정에 대하여 1자녀 정책을 “실시곤란”으로 인정하여 2자녀 출생을 용허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1) 남편이 처가에서 살며 그처가 무남독녀일때, (2) 산간벽지에 거주할때, (3) 남편이 3형제중 유일하게 생식가능할 때, (4) 혁명유공자의 독자일 때, (5) 부부 한쪽이 1등 질환으로 불구일때, (6) 연속 3대이상 독자일때, (7) 독자 독녀가 결혼하였을때 등이 포함되어 있다. 省의 규정을 보면 어떤 상황하에서도 제3자를 출생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조선족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물론 두자녀를 갖는데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두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독생자녀증을 교부받으며 그에 따른 모든 혜택 역시 享受한다.

### 4. 연변조사표본

조선족의 독생자녀증 수령상황을 보기위한 이 논문의 자료는 1986년 4월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가 하와이의 East-West Center의 협조하에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얻은 것이다. 추출비 2.5%에 해당하는 4,520가구내에 거주하는 15-71세의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출산력을 조사한바 있다. 본조사에 의하면 조선족 연령별출생율은 제1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민족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상부인 4,350명 중 1자녀만을 가진 수는 1,310명이었고 그중 10.2%인 134명이 독생자녀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漢族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며 漢族은 85년 길림성 농촌에서 62.4%(Tsuya and Choe, 1988), 82년

표4. 延邊朝鮮族 有配偶婦人の 避妊方法別 百分比

| 婦人の<br>年 齡 | 計         | 非妊娠<br>者 | 不妊手術 |    | 上배<br>(IUD) | 口經藥 | 其他 |
|------------|-----------|----------|------|----|-------------|-----|----|
|            |           |          | 男性   | 女性 |             |     |    |
| 20~24      | 100( 400) | 66       | 0    | 0  | 21          | 6   | 7  |
| 25~29      | 100( 882) | 28       | 0    | 1  | 51          | 10  | 10 |
| 30~34      | 100( 783) | 16       | 0    | 10 | 56          | 9   | 10 |
| 35~39      | 100( 619) | 6        | 1    | 23 | 57          | 7   | 6  |
| 40~44      | 100( 470) | 7        | 4    | 39 | 40          | 4   | 7  |
| 45~49      | 100( 483) | 30       | 5    | 29 | 28          | 1   | 7  |
| 계          | 100(3637) | 24       | 1    | 15 | 45          | 7   | 8  |

\* 괄호안의 숫자는 부인수

전국 천분의일 생육조사에서 42.3% (尙,1986)를 제시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대상인구를 40세미만의 유배우부인으로 국한하였다. 독생자녀가 14세를 넘으면 부모가 가임상태가 아닌이상 독생자녀중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조건에 근사적으로 맞추기 위하여 40세라는 상한을 둔것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독생자녀중수령을 계산할때 1자녀를 가진 부인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자격부인”이라는 새개념을 도입시키기로 하였다. 유자격부인은 (1) 독생자녀중제도가 대략 시작된 1979년 7월1일 현재로 1자녀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당시 임신하지 않고 있었던(즉 1980년 4월 이전에 제2자를 낳지않은) 부인과 (2) 1979년 8월1일 이후 첫 아이를 출생한 부인의 2郡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유자격 부인중에는 조사당시 2자녀 이상도 가질수 있다. 어쨌던 유자격부인은 전부 일단 독생자녀중을 받을 수 있는 “위험”(risk) 하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규정지은 유자격부인은 표본중에 1,725명 있었고 그중 552명이 제2자를 가져 1,173인 만이 조사일 현재 생존아 1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독생자녀중 수령자는 129명으로 이는 유자격부인의 7.5%, 1자녀부인의 11.0%에 해당한다. 수령 후 제2자를 낳기 위하여 “退証”한 자는 8명으로 수령자의 6.2%이다.

분석에 있어서 독생자녀중 수령에 대한 요인으로 다음 8개를 고려하였다. (1) 부인의 교육정도(EDUC), (2) 도농별거주지(PLAC), (3) 가구주와의 관계(RELT), (4) 부인의 직업(OCCU), (5) 남편의 직업(HOCC), (6) 생존아의 성(GEND), (7) 시부모와의 동거여부(PARE), 및 (8) 증명받을 자격이 생겼을 때의 부인의 연령(EAGE), 다변수분석에서는 비선형효과를 측정키 위하여 변수 (8)의 자승(EAGE 2)도 고려하였다.

### 5. 피임상황

연변의 50세미만 유배우부인은 4분의 3 이상이 피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제4표). 피임율은 연령과 함께 급속히 상승하여 30세후반에는 거의 전부가 피임중이었으나 최중연령군에서는 생리적불임을 반영하였음인지 피임율에 상당한 하락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된 피임방법은 IUD로 피임중의 부인의 근60%가 이용하고 있다. 불임수술은 주로 여성것이며 전피임 부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피임수술율은 연령과 함께 올라간다. 82년의 중국 천분지1 생육조사에 의하면 피임율은 77%로 본 조사와 비등하였지만 불임수술이 비교적 많아 35% 이상이 수술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30대 전반에는 불임수술이 자궁내 장치와 맞먹는 고율이었다(Qiu, 1984). 한국의 1985년 피임율은 70.5%였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불임수술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자녀가 없는 부인과 2자녀를 가진 부인에서는 도농간에 피임의 차가 별로 없었으나 1자녀 부인과 3자녀 이상을 가진 부인에서는 상당한 차가 보였다. 무자녀부인은 도농할 것이 없이 5%가, 2자녀 부인은 90%가 피임중이었다. 그러나 1자녀 부인은 도시에서 85%, 농촌에서 67%가 피임중이었고 3자녀 이상을 가진 부인은 도시에서 85%, 농촌에서 75%가 피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단변수분석

유자격부인의 독생자녀중 수령상황을 요인별로 보면 제5표와 같다. 부인의 교육정도에 따라 증명수용도는 상승하고 도시에 거주하면 월등히 높아진다. 또 수용율은 연령과 더불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농가구에는 수용자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가구주와의 관계는 별로 영향이

**Table 5.** Proportion of eligible women (Yanbian Koreans) who accepted the one-child certificate by selected factors, China: 1986

| Factor                              | Total sample |                     |                    | Group 1 |                     |                   | Group 2 |                     |                    |
|-------------------------------------|--------------|---------------------|--------------------|---------|---------------------|-------------------|---------|---------------------|--------------------|
|                                     | N            | Proportion Accepted | $\chi^2$           | N       | Proportion Accepted | $\chi^2$          | N       | Proportion Accepted | $\chi^2$           |
| Education of woman (EDUC)           |              |                     | 33.3 <sup>+</sup>  |         |                     | 4.6               |         |                     | 38.8               |
| Elementary or less                  | 83           | 1.2                 |                    | 30      | 3.3                 |                   | 53      | —                   |                    |
| Middle school                       | 776          | 4.9                 |                    | 263     | 8.0                 |                   | 513     | 3.3                 |                    |
| High school                         | 747          | 9.2                 |                    | 52      | 15.4                |                   | 695     | 8.8                 |                    |
| College                             | 119          | 17.6                |                    | 32      | 12.5                |                   | 87      | 19.5                |                    |
| Residence (PLAC)                    |              |                     | 360.6 <sup>+</sup> |         |                     | 60.5 <sup>+</sup> |         |                     | 305.1 <sup>+</sup> |
| City                                | 405          | 29.1                |                    | 113     | 26.6                |                   | 202     | 30.1                |                    |
| Town                                | 384          | 2.3                 |                    | 84      | 2.4                 |                   | 300     | 2.3                 |                    |
| Rural                               | 936          | 0.2                 |                    | 180     | 1.1                 |                   | 756     | —                   |                    |
| Age st eligibility (EAGE)           |              |                     | 34.5 <sup>+</sup>  |         |                     | 5.4               |         |                     | 31.9 <sup>+</sup>  |
| ≤23                                 | 575          | 2.4                 |                    | 43      | 4.6                 |                   | 532     | 2.2                 |                    |
| 24–25                               | 593          | 8.8                 |                    | 110     | 5.4                 |                   | 483     | 9.5                 |                    |
| 26–29                               | 489          | 11.4                |                    | 185     | 12.4                |                   | 304     | 10.8                |                    |
| 30–39                               | 68           | 10.3                |                    | 39      | 7.7                 |                   | 29      | 13.8                |                    |
| Relation with household head (RELT) |              |                     | 0.9                |         |                     | 8.4*              |         |                     | 1.6 <sup>+</sup>   |
| Head/ Spouse                        | 1417         | 7.8                 |                    | 355     | 8.4                 |                   | 1,062   | 7.5                 |                    |
| Daughter                            | 51           | 7.8                 |                    | 4       | 50.0                |                   | 47      | 4.3                 |                    |
| Daughter-in-law                     | 249          | 6.0                 |                    | 18      | 11.1                |                   | 231     | 5.6                 |                    |
| Occupation (OCCU)                   |              |                     | 165.7              |         |                     | 31.0*             |         |                     | 145.2 <sup>+</sup> |
| Industrial                          | 419          | 18.4                |                    | 99      | 16.2                |                   | 320     | 19.1                |                    |
| Farmer                              | 958          | 0.5                 |                    | 185     | 1.1                 |                   | 773     | 0.4                 |                    |
| Commerce/ Service                   | 102          | 10.8                |                    | 24      | 25.0                |                   | 78      | 6.4                 |                    |
| White collar                        | 191          | 17.3                |                    | 50      | 16.0                |                   | 141     | 17.7                |                    |
| Husbands' Occupation (HOCC)         |              |                     | 154.8 <sup>+</sup> |         |                     | 27.4 <sup>+</sup> |         |                     | 133.2 <sup>+</sup> |
| Industrial                          | 460          | 15.0                |                    | 102     | 13.7                |                   | 358     | 15.4                |                    |
| Farmer                              | 864          | 0.1                 |                    | 166     | 0.6                 |                   | 698     | —                   |                    |
| Commerce/ Service                   | 34           | 5.9                 |                    | 9       | 22.2                |                   | 25      | —                   |                    |
| White collar                        | 276          | 18.8                |                    | 84      | 12.5                |                   | 192     | 19.3                |                    |
| Sex of the living child (GEND)      |              |                     | 15.3 <sup>+</sup>  |         |                     | 10.4**            |         |                     | 6.8**              |
| Male                                | 918          | 9.8                 |                    | 212     | 13.2                |                   | 706     | 8.8                 |                    |
| Female                              | 807          | 4.8                 |                    | 165     | 3.6                 |                   | 642     | 5.1                 |                    |
| Living with parents (PARE)          |              |                     | 5.2*               |         |                     | 0.9               |         |                     | 3.7                |
| Yes                                 | 542          | 5.4                 |                    | 79      | 6.3                 |                   | 463     | 5.2                 |                    |
| No                                  | 1183         | 8.4                 |                    | 298     | 9.7                 |                   | 885     | 8.0                 |                    |
| Total                               | 1725         | 7.5                 |                    | 377     | 9.0                 |                   | 1348    | 7.0                 |                    |

\* p<0.05 \*\* p<0.01 + p<0.001

Group 1 : Women eligible for the certificate when the certificate program was introduced on 1 July 1979.

Group 2 : Women who became eligible after 1 July 1979.

**Table 6.** Acceptance probability by Yanbian Koreans of the one-child certificate, China : 1986

| Time from eligibility (mo.) | Gross probability |         |         | Net probability |         |         |
|-----------------------------|-------------------|---------|---------|-----------------|---------|---------|
|                             | Total sample      | Group 1 | Group 2 | Total Sample    | Group 1 | Group 2 |
| 2                           | 0.0129            | 0.0212  | 0.0105  | 0.0129          | 0.0212  | 0.0105  |
| 4                           | 0.0315            | 0.0345  | 0.0307  | 0.0315          | 0.0345  | 0.0307  |
| 6                           | 0.0457            | 0.0424  | 0.0468  | 0.0457          | 0.0424  | 0.0468  |
| 12                          | 0.0559            | 0.0530  | 0.0569  | 0.0560          | 0.0534  | 0.0569  |
| 18                          | 0.0628            | 0.0584  | 0.0644  | 0.0632          | 0.0594  | 0.0644  |
| 24                          | 0.0703            | 0.0663  | 0.0716  | 0.0712          | 0.0696  | 0.0718  |
| 30                          | 0.0727            | 0.0690  | 0.0740  | 0.0740          | 0.0735  | 0.0742  |
| 48                          | 0.0803            | 0.0769  | 0.0812  | 0.0783          | 0.0780  | 0.0785  |
| 60                          | 0.0868            | 0.0875  | 0.0838  | 0.0842          | 0.0891  | 0.0825  |
| 72                          | 0.0885            | 0.0902  | 0.0838  | 0.0972          | 0.1178  | 0.0866  |

Group 1 : Women eligible for the certificate when the certificate program was introduced on 1 July 1979

Group 2 : Women who became eligible after 1 July 1979

없는 것 같다. 우리민족의 강한 남아선호 사상을 반영하였는지 현존아가 남자일때 수용도가 2배로 높아져 있다. 선대와 동거하는 부부는 증명수령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독생자녀증제가 도입되었을 때 이미 증명신청자격이 있는 부인들을 제1군, 그후에 자격이 생긴 부인들을 제2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나 전반적 경향은 서로 비슷하였다. 다만 교육정도와 연령에서 약간의 차가 보였다.

조사당시 1자녀만을 가지고 있는 부인을 분모로 하여도 일반적인 경향은 제5표와 비슷하였으나 제2자를 가진 부인이 빠진만큼 절대율은 많이 높아져 있었다. 특히 제1군의 수치는 제2군보다 3배이상 높아 제1군에서 둘째아이 출생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 7. 생명표분석

제5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일 현재로 7.5%의 유자격 부인이 독생자녀증을 받았지만 자격발생시부터 증명교부시까지의 시간경과는 부인마다 다르다. 이러한 수용율의 시간적 과정을 보기위하여 생명표기법을 적용하였다. 둘째아이를 낳으면 독생자녀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둘째 아이 출생은 相爭原因(competing cause)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쟁원인을 제외하지 않은 조율 (crude rate), 상쟁원인을 제외하였을 때의 수용율을 순율(net rate)로 하여 계산한 결과를 제6표에 제시하였다. 자격발생후 6년 이내에 증명을 받는 율은 조율로 근 9%, 순율로 10%로 되어있으나 단산의 의사결정은 비교적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다. 조율로 보면 6년 내에 증명을 수령하는

**Table 7.** Proportion of Yanbian Korean women remaining undecided at specified time after eligibility for one-child certificate, China: 1986

| Time from eligibility (mo.) | Total sample | Group 1 | Group 2 |
|-----------------------------|--------------|---------|---------|
| 2                           | 0.9871       | 0.9788  | 0.9895  |
| 4                           | 0.9685       | 0.9655  | 0.9693  |
| 6                           | 0.9543       | 0.9576  | 0.9532  |
| 12                          | 0.9293       | 0.8859  | 0.9431  |
| 18                          | 0.8920       | 0.7851  | 0.9282  |
| 24                          | 0.8389       | 0.6737  | 0.8981  |
| 30                          | 0.8021       | 0.5995  | 0.8784  |
| 36                          | 0.7381       | 0.4881  | 0.8387  |
| 48                          | 0.6195       | 0.3773  | 0.6710  |
| 60                          | 0.4395       | 0.2823  | 0.4640  |
| 72                          | 0.3356       | 0.2348  | 0.3176  |

Group 1 : Women eligible for the certificate when the certificate program was introduced on 1 July 1979.

Group 2 : Women who became eligible after 1 July 1979.

부인의 절반이상이 6개월 이내에 약80%가 2년 이내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발생 일자에 따라 구분한 두군의 증명 수용상황에는 약간의 차가 있다. 즉 아주 초기에는 제1군의 조율이 더 빨리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6개월 이후부터는 제2군의 수령이 높아진다. 그리하여 결국 5년 후에는 양군이 비슷한 조율을 보이게 된다. 순율의 경향도 조율과 비슷하지만 제1군과 제2군의 차가 조율보다 훨씬 크다. 단 제2군의 표본의 크기는 4년후 상당히 작아지기 때문에 후기의 율해석에는 조심을 요한다.

제2자가 유자격부인에서 출생하는 상황을 역시 생명표적으로 나타낸 것이 표 7이다. 유자격 부인의 거의 60



**Table 8.** Effects of factors on the one-child certificate acceptance by Yanbian Koreans using a proportional hazards model, China: 1986

| Factor | Model 1            |               | Model 2            |               |                    |               |                    |               |
|--------|--------------------|---------------|--------------------|---------------|--------------------|---------------|--------------------|---------------|
|        | Total Sample       |               | Total Sample       |               | Group 1            |               | Group 2            |               |
|        | Coefficient        | Relative Risk | Coefficient        | Relative Risk | Coefficient        | Relative Risk | Coefficient        | Relative Risk |
| EDUC   | 0.015              | 1.02          | 0.039              | 1.04          | -0.212             | 0.81          | 0.049              | 1.05          |
| PLAC   | 2.391 <sup>+</sup> | 10.92         | 2.944 <sup>+</sup> | 18.99         | 2.484 <sup>+</sup> | 11.99         | 3.156 <sup>+</sup> | 23.48         |
| RELT   | -0.031             | 0.74          | -0.172             | 0.84          | 1.256              | 3.51          | -0.632             | 0.53          |
| OCCU   | -0.768             | 0.46          | 1.314              | 3.72          | 0.916              | 2.50          | 1.525*             | 4.60          |
| HOCC   | 2.326*             | 10.24         |                    |               |                    |               |                    |               |
| GEND   | 0.832 <sup>+</sup> | 2.30          | 0.848 <sup>+</sup> | 2.33          | 1.421**            | 4.14          | 0.704**            | 2.02          |
| PARE   | 0.205              | 1.23          | 0.154              | 1.17          | -1.034             | 0.36          | 0.483              | 1.61          |
| EAGE   | 0.735              | 2.08          | 0.847              | 2.33          | 0.687              | 1.99          | 0.471              | 1.60          |
| EAGE2  | -0.014             | 0.99          | -0.016             | 0.98          | -0.014             | 0.99          | -0.008             | 0.99          |

\*p<0.05; \*\*p<0.01; +p<0.001

Group 1 : Women eligible for the certificate when the certificate program was introduced on 1 July 1979.

Group 2 : Women who became eligible after 1 July 1979.

Levels of Variables : EDUC : Elementary of Less=1, Junior High=3, College=4 ; PLAC : Rural=0, Town=1, City=2 ; OCCU & HOCC ; Farmer=0, All Others=1 ; GEND ; Female=0, Male=1 ; RELT ; Head/Spouse=0, All Others=1

%가 6년 내에 둘째 아이를 낳지만 3년 이후에 급속한 율증가가 있다. 군에 따라 율의 증가 모습에 차이가 있으며 제1군은 9개월 후부터 제2자가 출생하기 시작하여 거의 선형으로 증가한다. 반면 제2군은 첫 3년 간은 출생율이 아주 미미하다가 그후부터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는 아마 4년간이란 출생간격이 권장되는 까닭일 것이다.

### 8. 다변수생명표분석

제5표에 열거한 요인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어 단변수분석만으로는 각 요인의 역할을 규정짓기 어렵다. 독생자녀증 수령의 기간별 수적율에 대한 각 요인의 순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변수생명표기법인 비례적 hazards model(Cox, 1972)을 적용하였다. 전표본에서는 8개의 요인과 부인연령의 자승(EAGE 2)를 합친 9개 변수를 동시분석 하였으나(모델 1) 군별로 볼때에는 남편의 직업(HOCC)를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Model 2). 이는 남편이 농업에 종사할 때 증명 영수자가 한군에서 全無하여 자료처리상 수령이 안되는 까닭이다. 다행히 남편 직업과 부인직업(OCCU)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인직업으로 남편직업을 상당히 대용할 수 있다.

제8표의 모델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요인 (PLAC, GEND, HOCC)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중 PLAC와 HOCC는 그 relative risk가 점추정으로 10을 초과하는

중요원인임을 알 수 있다. 모델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직업을 control 하였을때 부인의 직업은 증명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입히지 못한다. 현존아가 남자이면 수용도가 2배나 상승한다. 자격발생시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적어도 점추정에 한해서는 현존아의 성에 비등할 만한 상대적 위험도를 보였다.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는 연령도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모델 2에서도 모델 1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HOCC대신 OCCU가 유의하였고 지역차가 제 2군에서 尤甚하였다. 만일 GEND의 점추정이 제2군에서 상당히 약화된 것이 시일의 경과에 따른 선선호도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출산행동에 implication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 9. 결론과 토의

중국의 조선족은 56개 민족중 인구학적으로 가장 선진적이라 할 수 있고 그 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에 이미 대체 수준에 이른것으로 보이므로 (Han 등, 1988) “한자녀 키우기”에 대한 준비 태세는 가장 앞서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독생자녀증 수령상황은 漢族에 비하여 말도 안되게 낮다. 조선족은 소수민족이기에 누구나 합법적으로 두 아이를 출생할 수 있으나 한족은 몇가지 허용사항에 해당하는 부부를 제외하고는 두아이 낳기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漢族의 독생자녀증 수령에는 상당한 외적원인이 게재함을 의심할 수 있고 선진적인 조선족이라 하여도 한아이 키우기 운동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서는 근래에 와서 소수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이구적,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여러 시책이 실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계획생육(가족계획)에 대한 완화책도 그 하나다. 그러나 소수민족의 증식활동은 완전히 방임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계획생육에 관한 1982년의 중앙당의 지시를 보면 소수민족도 계획생육을 해야하지만 어느 정도의 관용이 용납된다는 것일 뿐이다. 구체적인 것은 각성, 또는 자치구에서 그지방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을 설정하여 상부기관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소수민족의 생육에는 다소의 차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2자녀까지 허용하고 제1자와 제2자간에는 상당한 간격이 요구되는 것 같다. 福建省에서는 한족과 소수민족간에 결혼이 이루어졌을 때 부부의 생활근거지에 따라 허용자녀수에 차가 있다. 만일 부부가 소수민족의 집에서 살면 2자녀를 가질 수 있는 반면 그들이 한족의 집을 생활근거로 하면 1자녀의 규정을 받게 된다. 흑룡강성의 83년의 “計劃生育若干規定”을 보면 조선족, 몽고족, 회족은 1자녀를 갖는 것을 최적으로 하지만 최고 2자녀까지 출생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길림성규정에 의하면 소수민족의 제1자와 제2자와의 간격은 4년이어야 하며 배우자중 하나가 漢族이면 8년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세 아이를 낳는 것은 소수민족에서도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寧賀回族자치구의 7개 산간지방과 四川省의 “특수사정”하에 있는 부부는 2명 이상을 출생할 수 있다는 명문이 있다. 국경지방의 소수민족은 자녀수에 별로 제한을 받지않는 모양으로 Fraser(1987)는 버마, 라오스, 월남의 국경에 거주하는 彝族, 요족에게는 4자녀, 5자녀도 장려되고 있다고 하였다. 필자가 재중교포로부터 직접 들은바에 의하면 연변에서도 소련과의 국경에 사는 조선족에게는 3아출생이 허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소수민족에 대한 인구정책에는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지않을 까 하는 조짐이 보인다. 현상태로는 소수민족이 전인구의 7%미만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이 아무리 급속히 증가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한족이 위협을

받을만한 사태는 없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지방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증가는 그 지방의 발전이나 안보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다수민족과 소수민족간의 차등성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100년내에 소수민족은 9억을 헤아리게 되어 한족의 성장이 정지되는 한 결국 한족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하는 상태가 산술적으로 가능한 적이다(Fraser 1987).

소수민족에 대한 장차 인구정책의 조정은 선택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Fraser(1987)는 우선 인구 100만 이상을 가진 민족부터 완화책이 없어질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다. 楊(1984)은 민족에 따라 그정황에 적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소수민족에 대하여 피임지식, 기술, 약제의 보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은근히 풍기고 있다. 陳(1986)도 소수민족에 대한 통일된 가족계획책을 강조하면서도 민족의 크기에 따른 자녀수 기준을 제창하였다. 즉 인구 10만 미만의 민족에게는 자녀수에 제한을 두지말고 30만 미만의 민족에게는 3자녀까지를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다. Hou Wenrou 교수(1981)는 원칙적으로 중국은 통일된 인구정책을 추구하며 한족이 계획인구발전을 실천하고 있는 이상 소수민족 역시 예외일수 없다고 명언하였다. 그러나 조선족에 대한 2자녀 허용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일이다. 조선족은 이미 출생율이 전민적중 가장 낮아 82년에 제11위의 소수민족이었으나 지금은 동족, 요族에 뒤져 제13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독생자녀증 수용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되는 8개요인을 분석하였으나 다변수분석상 거주지, 직업, 및 독생아의 性的 3요인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민족의 강한 남아선호태도는 이미 실증되었고 (Chung 등, 1974; Park, 1983), 중국인 또한 독생아가 남아일때 독생자녀증 수용도가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Arnold와 Liu, 1986). 본조사에서 비록 현존아의 성에 따라 2배의 수용도 차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거주지나 부모의 직업에 비하면 상당히 약한 요인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부부가 도시에 거주하거나 농업아닌 직업에 종사하면 독생자녀증 영수율이 10배이상 높아진다. 이 두요인은 공허 농촌생활에서의 이탈을 의미한다. 1982년의 전중국 조사에서도 도농간에는 증명수용에 대차가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 즉 도시에서는 1자녀부부의 78%가, 농촌에서는 31%가 독생자녀증을 교부받은 것이다(尙, 1986). 필자의 인상을 말하면 이 증명제는 도시에서 인기가 있다가보다는 농촌에서 인기가 너무나 없어서 이런 차가 났다고 하겠다.

독생자녀증 수령분석에는 약간의 방법적 문제가 있다.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분모로 써야하는 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자녀만을 가진 부인수보다는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위험”속에 있는 부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또 생명표분석에서 제2자 출생을 상쟁원인으로 취급하였으나 여기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두아이를 처음부터 낳고자 한 부부는 도대체 증명을 신청치 않을 것이니 양자간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두사건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는 상쟁원인 제거방식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제2자 출생이 확률변수임에는 틀림없고 제2자 출생이 없는 한 증명수용의 “위험”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방법론에 더 많은 고찰이 요망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년 출생력 가족 보건 조사 보고 서울, 1985
- Arnold F, Liu Zhaoxiang. *Sex preference,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in China. Population and Deveiopment Review* 1986; 12: 221-246
- Chung VM, Cha JH, Lee SJ. *Boy preference and family planning in Korea. Seoul, 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Behavioral Science, 1974*
- Cox DR. *Regression models and life tabl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972; 348: 187-220
- Dowdle N. *Variation in fertility and mortality among minority national population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China's 1982 Population Census, Hawaii, 1984,*
- Eberhard W. *China's minorities: yesterday and toda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Fei H. *Ethnic identification in China. Social Science in China,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1980; 1: 94-107*
- Fraser SE. *Chiana: population, education and people. Melbourne, 1987*
- Han Jo, Cho LJ, Choe MK, Tuan CH. *The fertility of Korean minority women in China: 1950-1985.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1988; 3(1): 31-54
- Wenrou H. *In china's population: problems and prospects. Beijing, Population Policy, 1981*
- Rark CB. *Preference for sons, family size and sex ratio: an empirical study in Korea. Demography* 1983; 20: 333-352
- Oiu Shushua et al. *A survey of China's birth control among women of childbearing age. In analysis on china's national one-per-thousand popualtion fertility Sampling survey. Beijing, 1984, pp. 139-144*
- Tsuya N, Choe MK. *Achievement of one-child fertility in rural Jilin Province, Chin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New Orleans, 1988*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igrations in the Far East during recent times-the countries of immigration. Population Bulletin* 1962; 2: 27-58
- Zhang Tienlu. *Growth of China's minority population. Beijing Review* 1984; 27(25): 22-26, 30
- 中國國家計劃生育委員會. 中國的計劃生育. 北京, 1987
- 陳성리. 吉林省少數民族生育現狀及展望. 人口學刊增刊, 1986, pp. 70-75
- 楊一星. 少數民族的人口現狀和計劃生育, 人口研究 1984; 4: 37-26
- 金虎德, 徐景堯. 黑龍江省朝鮮人口狀況淺析. 人口研究 1988; 1: 56-62
- 中國社會科學院. 中國人口年鑑. 北京, 1985
- 張天路, 楊一省. 中國少數民族人口發展概況. 中國人口年鑑 1985; 194-207
- 張天路. 中國少數民族人口的發展變化. 人口研究 1984; 6: 21-26
- 賀鄒城. 我國的民族政策.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s in China*에서 발표. Hawaii, 1988
- 中國人口情報資料中心. 中國人口資料手冊. 北京, 1983
- 肖振禹. 我國獨生子女狀況分析. 人口學刊 增刊 1986; 62-69
- 朱世忠, 劉錫山. 機械變動是延邊地區人口構成變化的根本原因. 人口學刊 增刊. 1986; 75-83